
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
2026년도 사업시행지침(변경)



경 기 도
(농업정책과)

||| 목 차 |||

I.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	3
II.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	20
III. 농어업 기후피해 대응자금 지원	39
IV.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	44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부서	담당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장 김동남 주무관 선종인	031-8008-4402 031-8008-2635
	친환경농업과 (벼매입자금)	팀장 최태병 주무관 이예지	031-8008-5450 031-8008-5452
NH농협은행 경기본부	현장지원단	과장 김혜진	031-220-8735

※ 관련문의처

- 사업관련 문의(신청 등) :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또는 사업장 관할 시·군 농정부서
- 대출가능액 등 문의 : 사업장 관할 농협은행 시·군 지부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,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용자지원
- 경기미를 수매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를 확보하고, 산지 쌀 유통 기능을 활성화
-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,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

2. 사업근거

- 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5년	2024년
농어업경영자금 (벼 매입자금)	40,000 (10,000)	37,643 (14,490)	53,500 (15,000)

II.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 등)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

- 해당분야 예외적용 : 임업(표고재배, 임산물가공, 조경수 생산, 분재, 종균목 구입 등)
- *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
- ‘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’ 선발자 우선 선정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▶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
- ▶ 농협·산림조합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- ▶ 가족(민법 제779조) 중 1인만 신청 가능. 농어업경영체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농어업인(부모님과 자녀, 부부, 형제 등)은 1명만 신청 가능. 다만, 가족의 한 구성원이 결혼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
- ▶ 법인(단체)으로 용자를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용자 지원 불가

2.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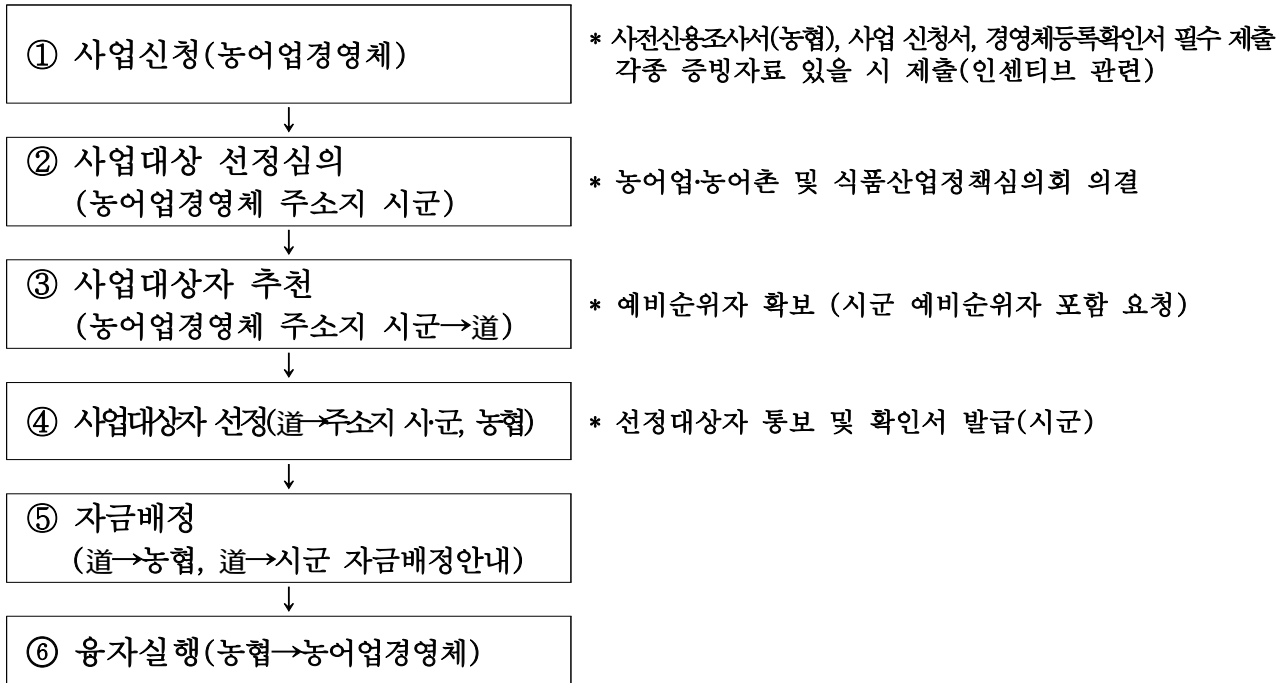
- 재원 / 이율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 / 연리 1%
- 용자금용도 : 농·축·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
- 대출한도
 - 농어업경영체 : 개인 6천만원 이내, 법인 2억원 이내
 - 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 - 농식품경영체* :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, 건조저장시설·임도정시설·쌀가공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
 - * 「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
- 상환조건 :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(단, 경기미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일시상환)

*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(농협시군지부)을 통해 확인 필요(신용·담보능력 확인)
 - 서식 2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

Ⅲ. 세부추진 사항(개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)

※ 농식품경영체 비 매입자금 융자신청 관련은 담당부서(친환경농업과)에서 추후 안내 예정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

2. 대상자 추천

가. 대상자 추천기준(시·군)

-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에 사업 신청
 - 구비서류: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<서식1>,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용조사서<서식 2>,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관련 증빙자료
-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(별첨)에 따라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* 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
- 기 융자금 수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동일 자금 한도 내에서 재신청 가능하며 신규 신청 농가보다 후순위 추천(상환 완료 시 전액 재신청 가능하며 후순위 추천)
-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
 - *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 (동점 시 우선선정)

나. 추천시 유의사항

- 시장·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(현재의 영농규모 등)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
-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,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%, 서면

계약 한 임차농지는 50%를 영농기반으로 인정

* 다만,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%까지 인정

- 용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(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, 서식 2)

*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(용자) 신청 전 용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
- 시장·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* 시·군에서는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
- 시장·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
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·선정 배제

- 시장·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
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
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현지조사 후 도에서 변경 요청(경영자금, 시설자금 간 변경 절대 불가)

* 서식 3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
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
3. 자금배정 단계

가. 자금배정

- 자금배정은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, 도에서 선정 후 배정하며, 시·군은 은행(농협)에서 대상자에게 용자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정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포기를 확정하고 후순위자나 타 시·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나. 용자실행

- 도: 용자지원 대상자 확정 시행(→시군, 농협)하고 자금 배정(→농협)

- 시군: 자금 배정 즉시 용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자금을 수령토록 통보

- 농협: 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용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실행
- 사업대상자: 자금선정 확인 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용자금 수령
 - ※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활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자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

4. 이행점검 단계

- 시장·군수는 농어업경영자금 “지원대상자 명단(서식6)”과 “선정확인서 발급대장(서식5)”을 작성 비치
-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(서식9)
- 도-시·군-용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 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
 - * 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용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
 - 시장·군수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道에 보고
 - * 회수사유 : 농업인 자격상실, 사업포기, 용자금 타 용도로 사용, 타 시도 전출 등
- 시장·군수는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, 관리카드·엑셀 등에 기록 관리(아래 예시 참조)

지원대상자			용자액 (천원)	대출 실행일	대출 만기일	점검내역				
주소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	점검 일자	점검자	상환실태	현장 운영실태	회수사유 발생유무

- ※ 경영자금은 사업완료(소모성 자재, 사료구입 등)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,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
 -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용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(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1조)
 - 용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
5. 사업추진 일정

구분	추진일정		비고
	접수	배정	
1차	2. 6. ~ 27.	3월중	
2차	4. 6. ~ 4. 17.	5월중	
3차	6. 8. ~ 19.	7월중	예산 소진시 미 실시 가능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접수마감일은 시·군별로 상이(각 시·군 농정부서 문의)

<별첨>

용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

1. 일반농업 분야

구 분	배 점 기 준	배 점	평가 점수
계	100		
영농경력 (10점)	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	10	
영농규모 (20점)	①일반농업	②시설농업(채소, 화훼, 특작류등)	
	4.0ha 이상	유리온실4,000평 및 비닐온실8,000평이상	20
	3.0ha~4.0ha미만	유리온실3,000평 및 비닐온실6,000평이상	17~19
	2.0ha~3.0ha미만	유리온실2,000평 및 비닐온실4,000평이상	14~16
	1.0ha~2.0ha미만	유리온실1,000평 및 비닐온실2,000평이상	11~13
	1.0ha미만	유리온실1,000평 및 비닐온실2,000평미만	10
수출실적 (10점)	연간 5억이상		10
	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		8
	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		6
	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		4
	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		2
고 품 질 생산농가 (25점)	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생산출하 농가		25
	친환경 인증(유기)		20
	친환경 인증(무농약)		15
	규격포장 출하농가		10
	실적이 없으나 향후 위 4개 항목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 농가		5
경영장부 기록여부 (10점)	일별, 주별, 전산프로그램기장, 일별복식부기		10
	주별 복식부기		8
	일별 간이기록장, 월별 전산프로그램 기장		6
	월별 간이기록장등		4
	미 기록		0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	5
	새로운 농기구 등 적정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	5
수상경력 (10점)	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	10
	농어업관련 시장·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	8
	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,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(단체)		6
	일반 농가(미 수상자)		0
자격증 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(1개월 이상)		5

2. 축산분야

구 분	배 점 기 준	배 점	평가수
계	100		
축산경력 (10점)	가축사육 경력 1년 단위로 2점 영농후계자 가점 5점 ※ 가점포함 최대 10점을 넘을 순 없음	10	
사육규모 (15점)	한우 200두 이상, 젓소 100두 이상, 돼지 2,000두 이상, 닭 3만수 이상	15	
	한우 100두 이상, 젓소 50두 이상, 돼지 1,000두 이상, 닭 2만수 이상	13	
	한우 50두 이상, 젓소 30두 이상, 돼지 500두 이상, 닭 1만수 이상	11	
	한우 50두 미만, 젓소 3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1만수 미만	9	
	※ 기타가축은 축종에 따라 중·소가축 기준에 준함		
축산업 허가(등록) (10점)	친환경 축산 직불제 참여농가	10	
	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	8	
	미허가(등록) 농가이나 향후 축산업 허가(등록) 추진중인 농가	6	
고 품 질 축 산 물 생산농가 (20점)	농장 HACCP 및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농가(단체), 경기도 가축 행복 인증농가	20	
	브랜드 축산물 생산농가(단체)	15	
	일반 사육농가	10	
자급사료 이용 (10점)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30% 이상	10	
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20% 이상	8	
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% 이상	6	
	한우, 젓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% 미만	4	
	※ 돼지, 가금, 기타가축은 5점 적용		
생산주체 (10점)	농·축산업협동조합(업종 축협포함)	10	
	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	8	
	축산 협업체, 단지 등	7	
	개별농가	5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(단체)	5	합산
	새로운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(단체)	5	
수상경력 (10점)	축산관련으로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10	
	축산관련으로 시장, 군수표창 이상 수상자(단체)	8	
	공인된 축산관련 단체, 축협조합장 수상자(단체)	6	
	일반 농가(미 수상자)	0	
자격증 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(1개월 이상)	5	

3. 수산분야

구 분	배 점 기 준				배점	평가 점수
계					100	
영어경력 (20점)	신청사업 경력을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				20	
영어규모 (10점)	어선어업	해면양식어업 (축제식포함)	육상양식(해면)	내수면양식		
	10톤이상	3ha이상	350평이상	550평이상	10	
	5~10톤	2.5~3.0ha	250~350평	450~550평	8	
	2~5톤	2~2.5ha	200~250평	400~450평	6	
	1~2톤	1.5~2.0ha	150~200평	300~400평	4	
	1톤미만	1.5ha미만	150평미만	300평미만	2	
교육훈련 (20점)	정부·자치단체·교육기관·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선도어업 경영체에서 교육을 받은 1일당 1점씩 가산				20	
경영장부 기록여부 (15점)	일별·주별·전산프로그램기장·일별복식부기				15	
	주별복식부기				13	
	일별간이기록장·월별전산프로그램기장				11	
	월별간이기록장 등				9	
	미기록				0	
수출실적 (10점)	연간 1천만원 이상 수출어가				10	
	연간 1천만원 이하 수출어가				8	
	수출실적이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어가				6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				5	합산
	새로운 어구나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				5	
수상경력 (10점)	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				10	
	시장·군수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				5	
자격증 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(1개월 이상)				5	

<서식 1> (농어업인, 법인 → 시군)

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 (농어업경영자금)

(접수번호 :)

1. 신청자

성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번호)	성별	
주소	전화번호	자택: 휴대폰:	

2. 신청내용

신청금액	금 원 (₩)	자금사용시기	월(상, 하)
영농작목	영농규모		
자금용도 (요약)			

※ 영농조합 등에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

3. 당해연도 경영계획

①조수입 (예상)	②경 영 비			③자가노력비	④연소득 ①-(②+③)
	자재구입비	인건비	계		
천원					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농어업경영자금 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(조합)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대표자(신청자) (인)

(영농조합 등 법인에서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첨부)

() 시장·군수 귀하

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2026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전화번호			
성 명 (법 인 명)	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		
신청사업명	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 조		대 출		자담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		천원		

※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자료” 에 의함
(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)

4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(조사기준일현재) : 천원

☞ **유의사항**
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(확인) 신청인 성명 : (서명)

2026년 월 일

() 시군지부장 (인)

<서식 3> (농어업인, 법인 → 시군)

농어업경영자금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

1. 주 소 :

2. 성명(법인명) :

3. 생년월일(법인번호)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	사업비(지원액)		변경사유	비고
당초	변경	당초	변경		

*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 첨부(별지 제1호 서식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)

2026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() 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4> 시군(시군보관용)

(발급번호 : 호)

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 (대상자 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성별	
용자결정금액	금	원 (₩)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6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.....절.....취.....선.....

(금융기관 제출용)

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 (대상자 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성별	
용자결정금액	금	원(₩)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6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() 농협장 귀하

※ 이 확인서와 용자 신청서류를 용자취급기관(해당농협)에 제출하십시오.

<서식 6> 시군

'26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명단

(단위 : 천원)

순위	분야	대상농가/ 농업법인			영농규모		사전 검토액	신청액	확정액	자금소요 시 기
		주 소	성 명 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번호)	면적(ha)	작목/품 목/업종				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∴										
∴										
예비										
1										
예비										
2										
예비										
예비										
예비										
예비										

※ 분야는 일반농업, 축산, 수산 등 작성하고 예비순위자 작성 (별첨 엑셀자료 참조)

<서식 8> 시군

'26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실적 보고(12월말 기준)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배 정 실 적		집 행 실 적			집행잔액	미집행사유
	농가수	배정액	농가수	집행액	비율		
계							
일반농업							
축 산							
수 산							

<서식 9> (용자취급기관 → 시·군)

'26년 농어업경영자금 용자실행 실적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지 원 대 상 자		배정액	실행액	실행일자	비 고
주 소	성 명 (법인명)				
계					

2

농어업 시설자금 지원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장 김동남 주무관 선종인	031-8008-4402 031-8008-2635
NH농협은행 경기본부	현장지원단	과장 김혜진	031-220-8735

※ 관련문의처

- 대출가능액 등 관련 문의 : 사업장 관할 농협은행 시·군 지부
- 사업관련 문의(신청 등) :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또는 사업장 관할 시·군 농정부서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, 도내 농어업 경영체에 생산·유통·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
-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
2. 사업근거

- 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5년	2024년
시설자금	10,000	23,368	10,000

II.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 등)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
-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(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)
- '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'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(단, 예산범위 내 시행)
- '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' 선발자 우선 선정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▶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
- ▶ 농협·산림조합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- ▶ 가족(민법 제779조) 중 1인만 신청 가능. 농어업경영체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농어업인(부모님과 자녀, 부부, 형제 등)은 1명만 신청 가능. 다만, 가족의 한 구성원이 결혼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
- ▶ 법인(단체)으로 용자를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용자 지원 불가

2. 지원조건

- 재원 / 이율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 / 연리 1%
- 용자금용도 : 영농기반 조성 (*비료, 유류,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)
- 대출한도 : 개인 3억원 이내, 법인 5억원 이내
 - 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상환조건 : 개인·법인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 - 단, 청년 농어업인(만18세 이상 40세 미만)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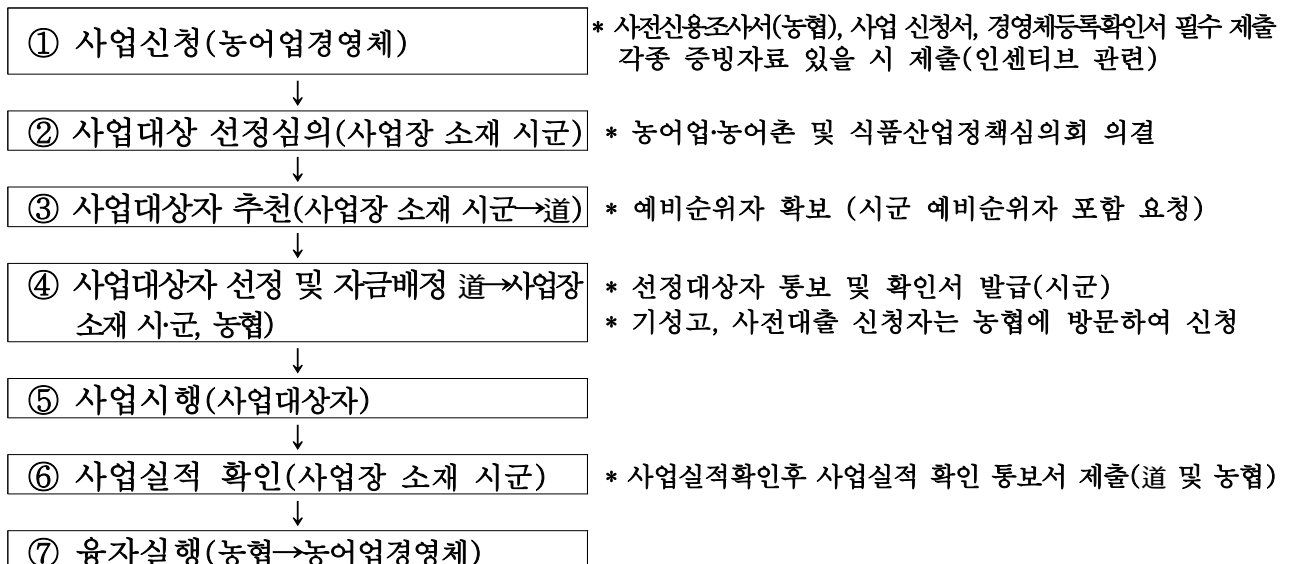
*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(농협시·군지부)을 통해 확인 필요(신용·담보능력 확인)
 - 서식 2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

3. 대상사업

- 농업 : 농지구입,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, 시설물설치, 묘목·화훼·종묘 구입 등
- 축산 : 축사 신·개축, 초지 및 사료포 조성, 가축 입식(모돈구입 등) 등
- 수산 : 어선구입·건조 및 개·보수, 시설물 설치 등
- 임업 : 표고재배, 임산물 가공, 조경수 생산, 분재, 종균목 구입 등

Ⅲ. 세부추진 사항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

2. 대상자 추천

가. 대상자 추천기준(시·군)

- 용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에 사업 신청
 - 구비서류: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 신청서<서식1>,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용조사서<서식 2>, 사업계획서<서식1-3>,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관련 증빙자료
- 용자금 신청자는 신청 전 금융기관(농협)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**용자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** *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
- 기 용자금 수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동일 자금 한도 내에서 재신청 가능하며 신규 신청 농가보다 후순위 추천(상환 완료 시 전액 재신청 가능하며 후순위 추천)
-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
나. 추천 시 유의사항

- 시장·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(현재의 영농규모)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**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**
 - * 특히, 하우스 설치 및 가축입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영농규모(가축 수, 시설면적 규모 등)를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시 대조 확인
-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,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%, 서면 계약한 임차농지는 50%를 영농기반으로 인정
 - * 다만,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%까지 인정
- 용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**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(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, 서식2)**
 - *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(용자) 신청 전 용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 - * 농신보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에서는 종묘구입, 가축입식 등은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안내 철저(담보필요)
 - * 농지 구입의 경우,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, 대출 실행 전에 담보 설정 절차를 완료해야 함
- 시장·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(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)의 위반 등 불법사항,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- * 시·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안배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- 시장·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
- 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. 단, 당해연도 기성고 70% 이상인 경우 후년도 우선 지원 가능
- 시장·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 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·군 현지 조사 후 도에 변경 요청(경영자금, 시설자금 간 변경 절대 불가)
- * 서식 3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- 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
3. 자금배정 단계

가. 대출방법

-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에 따른 사후 대출이 원칙(기성고에 따른 분할 대출 포함)이나,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·군이 확인한 사전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채권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(대출금 30% 범위 이내 실 소요액)
- 사전대출을 원할 시 사업대상자는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자료*를 시·군에 제출, 시·군에서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'사업실적 확인 통보서<서식4>' 발급하여 道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 - *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청구서, 납품내역서, 금융거래자료, 시설 공정률 증명자료 등
 - 잔여 대출금을 실행할 경우에도 시·군에서는 현장점검, 상기 증빙자료와 '사업실적 확인 통보서<서식4>' 를 검토 후 道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나. 용자실행

- 도: 용자지원 대상자 확정 시행(→시·군, 농협)하고 자금 배정(→농협)
- 시·군: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사실 통보후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통보
- 농협: 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용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실행
- 사업대상자: 자금선정 확인 후 사업 실적에 따라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용자금 수령

※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활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자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

4. 이행점검 단계

- 시장·군수는 농어업시설자금 “지원대상자 명단(서식6)”과 “선정확인서 발급대장(서식4)”을 작성 비치
-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(서식8)
- 도-시·군-용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 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**사업포기**를 한 경우 **도에 보고**
*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용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
 - 시장·군수는 **용자금 회수 사유**가 발생한 경우 **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**하여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**결과를 도에 보고**
*회수사유 : 농업인 자격상실, 사업포기, 용자금 타 용도로 사용, 타 시·도 전출 등
- ※ (경기도)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·군 제공(매분기)
- 시장·군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,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**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**
 -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용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(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1조)
 - 용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-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 <서식7>
-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, 협의,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

5. 사업추진 일정

구분	추진일정		비고
	접수	배정	
1차	2. 6. ~ 27.	3월중	
2차	4. 6. ~ 4. 17.	5월중	
3차	6. 8. ~ 19.	7월중	예산 소진시 미 실시 가능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지원 자금이 소진될 경우 3차 용자지원까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
평가방법 및 배점

구 분	배 점	점 수	비 고
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(15점)	영농정착의욕	3~5	상(5점) 중(4점) 하(3점) 각 점수 합산
	사업계획의 타당성	3~5	
	지역사회기여도	3~5	
자경영농규모 (20점)	2.0ha이상	20	
	1.5ha이상 ~ 2.0ha미만	19~17	
	1.0ha이상 ~ 1.5ha미만	16~14	
	0.5ha이상 ~ 1.0ha미만	13~11	
	0.5ha미만	10	
영농경력 (10점)	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	1~10	
농수산계학력 (10점)	농수산계대학졸업자	10	
	농수산계전문대학졸업자, 최고농업경영자과정	8	
	일반대학 및 농수산계고등학교졸업자	6	
	기타학교졸업자	4	
학습단체활동 (10점) ○ 영농후계자 ○ 농어촌지도자 ○ 작목반참여	2종참여	10	
	1종참여	5	
	미참여	0	
수상경력 (10점)	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(단체)	10	
	시장·군수 이상 표창 수상자(단체)	8	
	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수상자, 농협조합장(단체)	6	
	수상경력 없음	0	
기술개발 (10점)	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5	합산
	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	5	
고품질 생산농가 (10점)	G마크 생산 출하 농가	10	
	친환경 인증, 품질인증(HACCP 등) 농가	8	
	규격포장 출하 농가	5	
	일반 농가	3	
자격증(5점)	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(1개월 이상)	5	

영농규모 평가기준(자영규모)

구분 품목	0.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	0.5~1.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	1.0~1.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	1.5~2.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	2.0ha 이상 준하는 농가
	ha미만	ha미만	ha미만	ha미만	ha이상
식량작물	0.70	0.70~1.40	1.40~2.10	2.10~2.80	2.80
노지채소	0.33	0.33~0.65	0.65~0.98	0.98~1.31	1.31
시설엽근채	0.12	0.12~0.24	0.24~0.36	0.36~0.48	0.48
시설과채	0.08	0.08~0.16	0.16~0.24	0.24~0.32	0.32
노지과수	0.23	0.23~0.45	0.45~0.68	0.68~0.91	0.91
시설과수	0.08	0.08~0.16	0.16~0.25	0.25~0.33	0.33
화 훼	0.05	0.05~0.09	0.09~0.14	0.14~0.19	0.19
약용작물	0.14	0.14~0.27	0.27~0.41	0.41~0.54	0.54
특용작물	0.72	0.72~1.43	1.43~2.15	2.15~2.87	2.87
느타리버섯	0.03	0.03~0.06	0.06~0.09	0.09~0.12	0.12
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	두(수)미만
한우(번식)	18	18 ~ 36	36 ~ 54	54 ~ 72	72
한 육 우	10	10~20	20~31	31 ~ 41	41
낙 농	2	2~5	5~7	7 ~ 10	10
양돈(비육)	36	36~73	73~109	109 ~ 145	145
양돈(번식)	8	8~15	15~23	23 ~ 31	31
양계(산란)	756	756~1,512	1,512~2,268	1,512~2,268	2,268
양계(육계)	2,459	2,459~4,918	4,918~7,378	7,378~9,837	9,837

※ 세부적인 사항은 농축산물 표준소득(농진청)자료 참고

※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(농업소득)을 감안하여 배점

※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%, 그 외의 기반은 50% 인정

용자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

공통서류	주민등록증(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, 도장(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인감도장, 그 외에는 사용도장)			
담보대출	제출서류	수량	발급처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기부등본(대지, 건물) ○ 도시계획확인원(지적도) 또는 국토이용확인원 ○ 토지, 건축물대장등본 ○ 인감증명서 ○ 임대차계약서(사본) ○ 등기권리증(사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 1통 1통 각1통 1통 입주인전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기소 구청(군청) 구청, 읍,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본인보관분 본인보관분 	아파트및집단주택제외
농신보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○ 등기부등본 ○ 건강보험증(사본) (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) ○ 농지원부(자경농) ○ 임대차계약서(임대차농) ○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○ 세목별과세증명서 	각1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청, 읍, 면사무소 FAX민원 (1577-1000) 구청, 읍, 면사무소 세무서 구청, 읍, 면사무소 	

※ 용자신청 전 신청예정인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【참고사항】

- 위 제출서류 중 일부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 시·군 지부에 문의

<서식 1-2> 농어업법인

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(농어업시설자금)

신청액 _____ **백만원**

일	법인명				대표자				홈페이지				
	주 소							E-mail					
	연락처	전화 :			Fax :			휴대폰 :					
반	주 생산품	품 목	계										
		생산량(톤)											
현	경영형태	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주식회사, 생산자단체, 기타						설립년도					
	시설 규모 (㎡)	부지	건물	오피수 (톤)	주요설비	시설투자 (백만원)	계	보조	용자	자 담 (실투자비)			
운	가동 실적	연간생산 능력(톤)	연 간 가동일수	연 간 생산량(톤)	총매출액 (백만원)	국내매출액 (백만원)	수출액 (백만원)	수출국					
		원료 조달	계	자가생산	개별농가	산지조합	산지수집상	도매시장	기타				
	농산물 사용량 (연간)	톤		원산지		경기도(%), 타 지역(%), 경기도 인증 G마크(%), 지역명품(%), 타지역 및 비인증(%)							
영	판매 방법	계	직 거 래			소 매 상			도 매 상				
			방문객 관광객	직관점 전시 판매장	통신 판매	백화점 할인점	농수 축협	식당	기타	종합 도매업체	특정 도매업체	기타	
	비용 (백만원)	계	원료구입비		인건비	연구개발비		판매·홍보		기타			
태	고용현황	상용직		명		일용직		명					
	우선순위 대상(✓)	① 유망·벤처·수출유망중소기업 ② 기업·농업상생기업 또는 공유경제실천기업 ③ 경기농산물 원료사용(%), ④ 신기술,신상품 개발 기업 ⑤ 기타()											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농어업시설자금 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업체 주 소 :
대 표 자 :

(인)

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1-3> 농어업인, 법인

사 업 계 획 서

구분	사 업 명	사 업 계 획	소 요 사 업 비		
			계	용자금	자부담
계					
		※ 시설자금 세부계획서 별도 첨부(자유서식) - 시설자금, 경영자금 구분 작성			

위와 같이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업체 주 소 :

대 표 자 :

(인)

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3> (농어업인, 법인 → 시군)

농어업시설자금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

1. 주 소 :

2. 성명(법인명) :

3. 생년월일(법인번호)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	사업비(지원액)		변경사유	비고
당초	변경	당초	변경		

*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 첨부(별지 제1호 서식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)

2026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() 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4> 시군(시군보관용)

(발급번호 : 호)

농어업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 (대상자 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성별	
용자결정금액	금	원 (₩)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6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.....절.....취.....선.....

(금융기관 제출용)

농어업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 (대상자 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성별	
용자결정금액	금	원(₩)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6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() 농협장 귀하

※ 이 확인서와 용자 신청서류를 용자취급기관(해당농협)에 제출하십시오.

<서식 5> (시군 → 道, 농협)

사업실적(추진계획) 확인 통보서

1. 사업명 :
2. 사업자
 - 성명(법인명) :
 - 생년월일(법인번호) :
 - 주 소 :
3. 사업계획 (행정기관 승인분)
 - 사업량 :
 - 사업내용 :
 - 사업장소재지 :
 - 사업비 :

(단위 : 원)

총 투자계획 (가 = 나 + 다)	용 자 (나)	자 부 담 (다)	비 고

4. 사업실적

(단위 : 원)

총투자계획 (가)	사업추진실적			
	대금지급분 (라)	대금미지급분 (마)	계 (바 = 라 + 마)	비율 (바 / 가)

주 : 대금미지급분은 외상구입(설치)등으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

위와 같이 확인 통보 합니다.

2026. . .

확인자 ○○ 시장·군수

직인

NH농협은행 ○○ 시·군지부장 귀하
경기도지사 귀하

<서식 7> 시군

'26년 농어업시설자금 지원실적 보고(12월말 기준)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배 정 실 적		집 행 실 적			집행잔액	미집행사유
	농가수	배정액	농가수	집행액	비율		
계							
일반농업							
축 산							
수 산							

<서식 8> (용자취급기관 → 시·군)

'26년 농어업시설자금 용자실행 실적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지 원 대 상 자		배정액	실행액	실행일자	비 고
주 소	성 명 (법인명)				
계					

농어업시설자금 관리카드

인적사항

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번호)	
주소		전화번호	
사업장 소재지			

융자금 지원(대출) 현황

지원 구분	융자지원 정보			사업량	대출 실행일	상환 만기일
	확정액	지급액	상환방법			
시설자금						

사업계획 및 실적

계획, 실적, 착공,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
*사업추진과정(전·중·후) 사진 포함

사업추진 점검내역

점검일자	점검자	점 검 결 과
00.00.00. ()	○○○	○ 상환 중, 상환완료, 연체중 등 기재 ○ 공사(식재)중, 현상유지, 사업부진,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20%;">사진 부착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width: 60%;">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</div> </div>

기타 특이사항

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장 김동남	031-8008-4402
		주무관 선종인	031-8008-2635
NH농협은행 경기본부	현장지원단	과장 김혜진	031-220-8735

※ 관련문의처

- 사업관련 문의(신청 등) :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또는 사업장 관할 시·군 농정부서
- 대출가능액 등 문의 : 사업장 관할 농협은행 시·군 지부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
-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피해에 강한 회복력을 갖춘 농어업 환경을 조성해, 농어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

2. 사업근거

- 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26년
기후피해 대응자금	경영자금	5,000
	시설자금	12,000
	계	17,000

II.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 등)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중 당해 지원하는 극한기후* 로 기후재해 피해를 입어 NDMS에 피해 규모가 확정된 농어업 경영체(경영자금의 경우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)

* 폭설·폭우·태풍·가뭄·폭염·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공식적으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▶ 농어업 경영·시설자금 지원 제외대상
- ▶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, 피해의 경감,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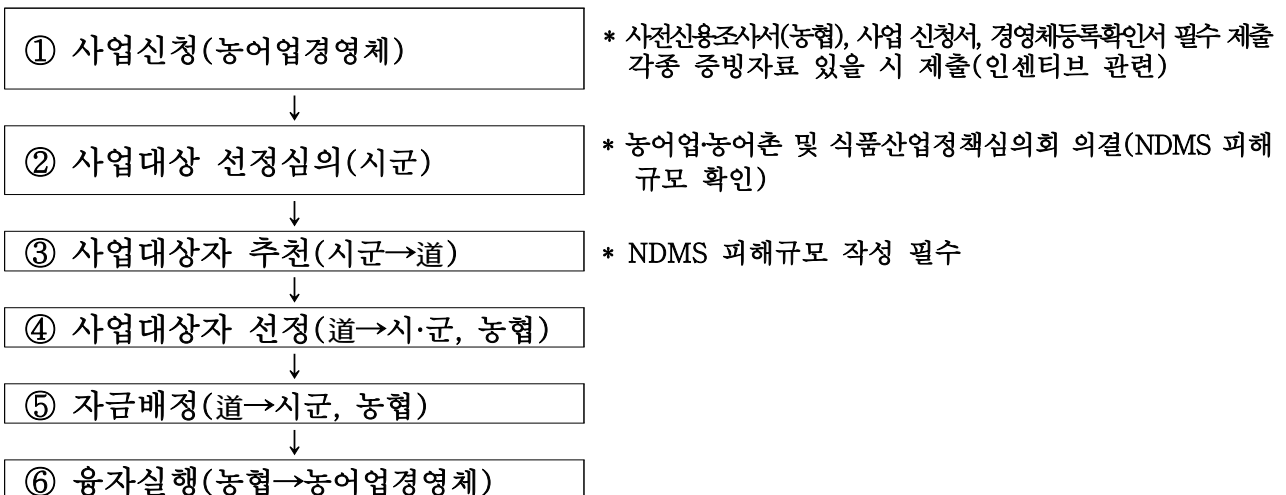
2. 지원조건

- 재원 / 이율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 / 연리 1%
- 용자금용도
 - 경영자금 :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경영·운영비
 - 시설자금 :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
-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
 - 경영자금 : 개인 5천만원, 법인 1억원 이내 / 2년 만기 일시상환
 - ※ 경영자금(경영규모 대비 피해율) : 40% 이하 2천만원, 41~69% 3천만원, 70% 이상 5천만원
 - 시설자금 : 개인 5억원, 법인 7억원 이내 / 5년거치 5년 균분상환(청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)

*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(농협시·군지부)을 통해 확인 필요(신용·담보능력 확인)
 - 경영·시설자금 서식 2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

III. 세부추진 사항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

※ 시설자금의 경우 용자 실행 전 사업실적 확인 후 사업실적확인 통보서 제출(道 및 농협)

2. 대상자 추천

가. 대상자 추천기준(시군)

- 용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에 사업 신청
 - 구비서류: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 신청서,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용조사서, 사업계획서,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관련 증빙자료(서식은 각 경영, 시설자금 서식 참조)
- 기 용자금 수혜자도 전액 재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선정
- 기후피해 대응자금 내 경영·시설자금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- 동 지침상 경영·시설자금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, 추천 서식 중 NDMS 확정 피해규모(금액, 피해율) 반드시 작성(별도 엑셀 자료 참조)

나. 추천 시 유의사항

- 시장·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(현재의 영농규모)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
 - * 특히, 하우스 설치 및 가축입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영농규모(가축 수, 시설면적 규모 등)를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시 대조 확인
-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,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%, 서면 계약한 임차농지는 50%를 영농기반으로 인정
 - * 다만,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%까지 인정
- 용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
 - *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(용자) 신청 전 용자가 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 - * 농신보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에서는 종묘구입, 가축입식 등은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안내 철저(담보필요)
- 시장·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(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)의 위반 등 불법사항,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
 - * 시·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안내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- 시장·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
 - 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. 단, 당해연도

기성고 70% 이상인 경우 후년도 우선 지원 가능

- 시장·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 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·군 현지 조사 후 도에 변경 요청(기후재해 피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사업변경 절대 불가)
- * 경영·시설자금 서식 3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- 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
3. 자금배정 단계

가. 자금배정

- 자금배정은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, 도에서 선정 후 배정하며, 시·군은 은행(농협)에서 대상자에게 용자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정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포기를 확정하고 후순위자나 타 시·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나. 용자실행

- 도: 용자지원 대상자 확정 시행(→시·군, 농협)하고 자금 배정(→농협)
 - 시·군: 자금 배정 즉시 용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자금을 수령토록 통보
 - 농협: 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와 도 용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실행
 - 사업대상자: 자금선정 확인 후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용자금 수령
- ※ 시설자금의 경우 각 시·군은 사업 실적 확인 후 사업실적 확인 통보서 작성 및 제출(도 및 농협)

4. 이행점검 단계

- 시장·군수는 “지원대상자 명단”과 “선정확인서 발급대장서식”을 작성 비치(경영, 시설자금 서식 참조)
-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
- 도-시·군-용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 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도에 보고
 - * 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용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
 - 시장·군수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

융자금 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도에 보고

* 회수사유 : 농업인 자격상실, 사업포기,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, 타 시도 전출 등

- 시장군수는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, 관리카드·엑셀 등에 기록 관리(아래 예시 참조)

지원대상자			융자금 (천원)	대출 실행일	대출 만기일	점검내역				
주소	성명 (대표자)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	점검 일자	점검자	상환실태	현장 운영실태	회수사유 발생유무

※ 경영자금은 사업완료(소모성 자재, 사료구입 등)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,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

-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(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1조)
-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
5. 사업추진 일정

- 기후재해 발생시 수시 배정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기도청	농업정책과	팀장 김진철 주무관 최인혜	031-8008-2615 031-8008-4453
NH농협은행 경기본부	현장지원단	과장 김혜진	031-220-8735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·운영 지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화된 체험·안전·편의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 증대

2. 사업근거

- 「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「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7조
- 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6년	2025년	2024년
콘텐츠 개발 지원	500	-	-
시설 개보수 지원	2,500	-	-

II.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농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▶ 기존 용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마을,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마을
- ▶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경우(지방비 포함)
- *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거나 타 용도로 보조금 사용 등
- ▶ 타 농업정책사업(지자체 사업 포함)으로 동일 목적(시설 개보수)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※ 시·군·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무효, 지원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

2. 지원조건

○ 채원 / 이율 :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(농업발전계정) / 연리 1%

○ 용자금용도

▷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 지원

- 신규 체험프로그램 및 기존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·운영

▷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

- (편의시설) 숙박, 급식, 화장실, 샤워장, 운동시설 등

- (안전시설) 비상구, 전기·가스, 소방시설, 비상구 등

- (체험시설) 목공 작업장, 조리 실습장 등

< 지원제외 >

(농촌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 지원)

- 태블릿PC 구매, 시설비, 수선비 등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경비
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, 공과금, 차량 유지관리비 등 단체 운영경비

(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)

- 체험마을 대표자 개인 소유 시설이면서 체험마을 운영 목적과 관련없는 시설
- 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조형물 설치비 및 경상적 경비(여비, 업무추진비 등)
-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및 인·허가 취득등록 비용
- 소모성·일회성 자재(집기류, 체험도구 등) 구입비

○ 용자액

▷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 지원: 개소당 50백만원(10개소)

- 상환조건 : 2년 만기 일시상환

▷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: 개소당 3억원 이내

- 상환조건 :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
*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* 신청 전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가능 규모를 미리 은행(농협시·군지부)을 통해 확인 필요
(신용·담보능력 확인)

- (서식2)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

-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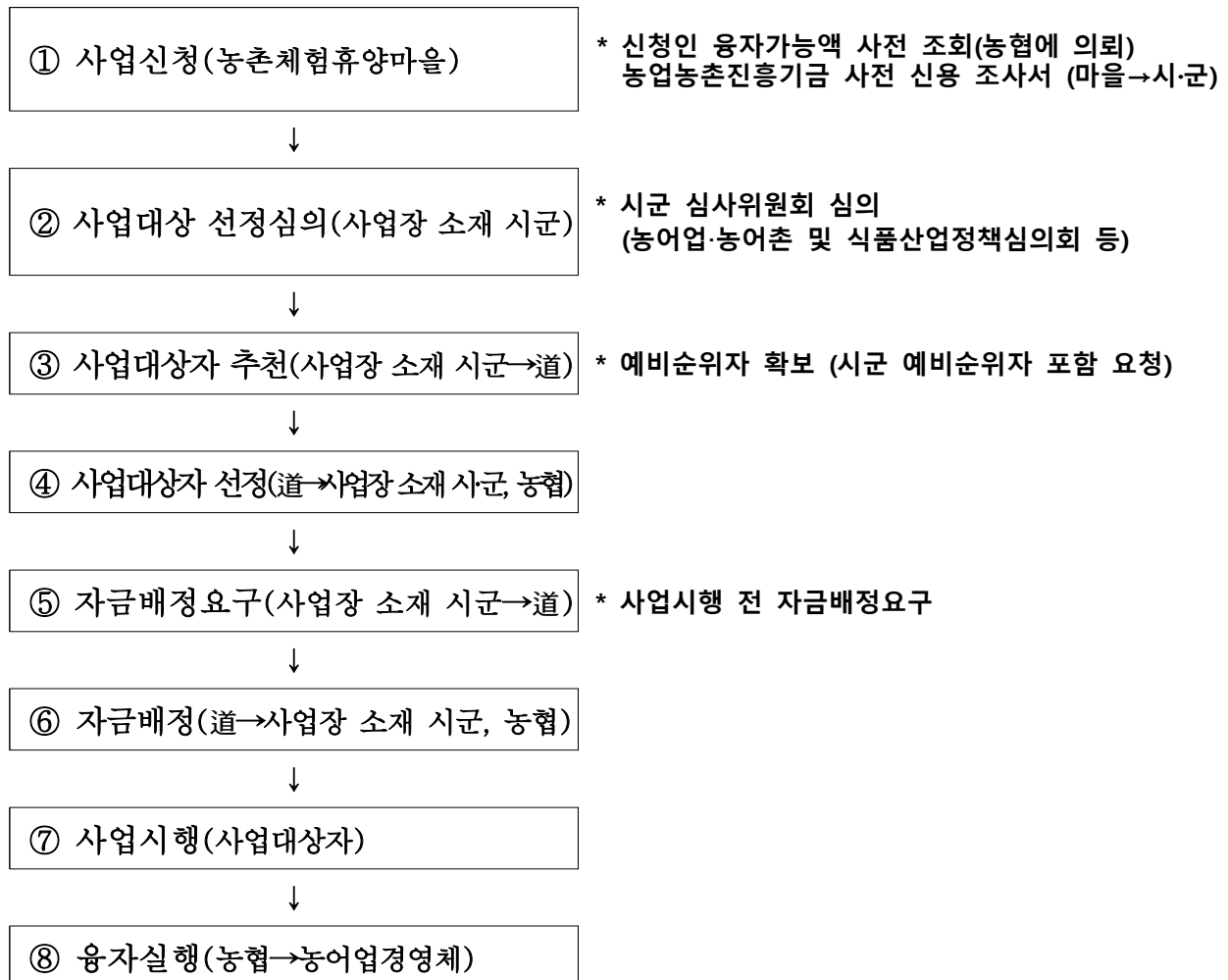
3. 대상마을 자격

- 도내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(시장·군수 지정)
-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의 합의를 얻고(서식<1-3>)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을 것
- (농촌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 지원)
 - 최근 2년 이내 체험 운영 실적이 있으며 '25년 방문객 1,000명 이상인 마을(Rucos 기준)
 - ※ 다수 경영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시 시·군 지정 중간지원조직에서 신청 가능
- (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)
 -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운영실적이 5년 이상일 것(휴업기간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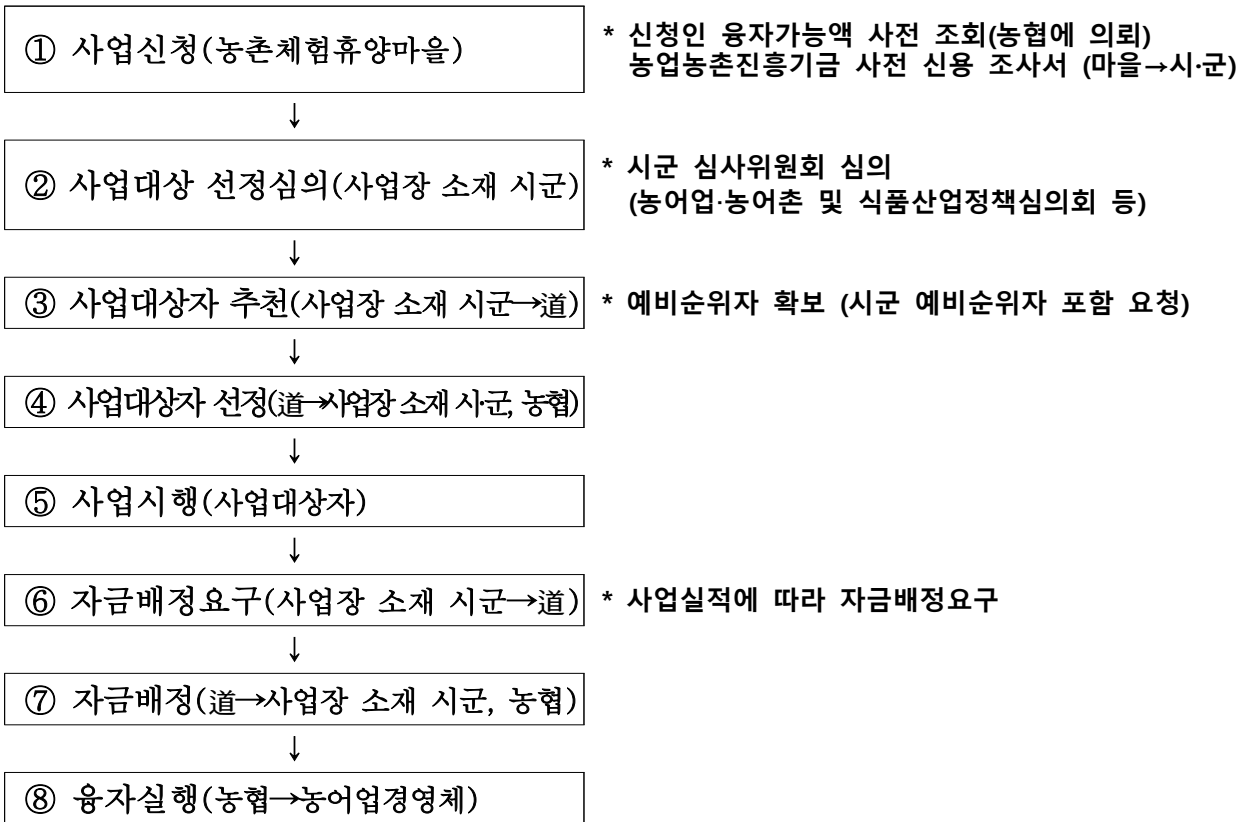
Ⅲ. 세부추진 사항

1.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

가.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 지원



나.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



2. 대상자 선정 및 추천

가. 사업대상자 추천

- 용자를 받고자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에 사업 신청
 - 구비서류: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 신청서<서식1-1>, 사업계획서<서식1-2>, 마을회의록<서식1-3>,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용조사서<서식2>, 관련 증빙자료(사업자등록증, 마을 지정증서, 법인등기부등본 등)
- * 시·군·구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실 대출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을 수 있음
- 시·군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<서식 1-1, 1-2>,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시·도에 보고<서식 6> *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
- 심사위원회 구성은 내·외부 위원을 활용(시·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) 하는 등 시·군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정성 확보 필요
-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 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 추가 선정 여부를 도와 협의

나. 대상자 추천 유의사항

- 용자금 신청자는 신청 전 금융기관(농협)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**용자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** *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
 - 시·군은 신청자의 농협 금융상담* 여부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용조사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 조치
 - * 대출 연체 이력, 개인 회생·파산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확인
- 시장·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‘시설 개보수 필요 여부’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**현지실사 등을 통해 반드시 현장 확인**
 - * 특히, 신청 시 시설면적 규모 등을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시 대조 확인
- 용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(농협)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**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**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(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, 서식1-1)
 - *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,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(용자) 신청 전 용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(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)
- 시장·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의 위반 등 불법사항,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
 - * 시설 증축·신축 시 건축법 등 기타 관련 부서 반드시 협의
 - * 시·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안배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- 시장·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
 - *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. 단, 당해연도 기성고 70% 이상인 경우 후년도 우선 지원 가능
- 시장·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정당한 사업대상자가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
-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
 -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현지 조사 후 도에 변경 요청
 - * 서식 3. 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 확인
 - *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(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)

3. 자금배정 단계

가.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 지원

○ 자금배정

- 자금배정은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, 道에서 선정 후 배정하며, 시·군은 은행(농협)에서 대상자에게 용자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정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포기를 확정하고 후순위자나 타 시·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○ 용자실행

- 도: 용자지원 대상자 확정 시행(→시군, 농협)하고 자금 배정(→농협)
- 시군: 자금 배정 즉시 용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자금을 수령토록 통보
- 농협: 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용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실행
※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활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자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

나.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

-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에 따른 사후 대출이 원칙(기성고에 따른 분할 대출 포함)이나,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·군이 확인한 사전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채권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(대출금 30% 범위 이내 실 소요액)

- 사전대출을 원할 시 사업대상자는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자료*를 시·군에 제출, 시·군에서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‘사업실적 확인 통보서<서식5-1>’ 발급하여 道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*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청구서, 납품내역서, 금융거래자료, 시설 공정률 증명자료 등

- 잔여 대출금을 실행할 경우에도 시·군에서는 현장점검, 상기 증빙자료와 ‘사업실적 확인 통보서<서식5-1>’ 를 검토 후 道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4. 이행점검 단계

- (콘텐츠 개발 지원) 시장·군수는 “지원대상자 명단(서식4-1)”과 “선정확인서 발급 대장(서식4-2)”을 작성 비치

-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 <서식7>

- 도-시·군-용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

- 시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

*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용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

- 시장·군수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

용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도에 보고

*회수사유 : 체험마을 지정취소, 사업포기, 용자금 타 용도로 사용 등

※ (경기도)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·군 제공(매분기)

○ 시장·군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,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·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(서식 8)

※ 콘텐츠 개발 지원 자금은 사업완료(프로그램 운영 완료 등)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 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,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

-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용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(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1조)

- 용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

○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·허가, 신고, 협의,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

5. 사업추진 일정

구분	추진일정		비고
	접수	배정	
1차	4. 20. ~ 5. 8.	5월중	
2차	7. 13. ~ 31.	8월중	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지원 자금이 소진될 경우 2차 용자지원까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

<별첨2>

용자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

공통서류	주민등록증(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, 도장(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인감도장, 그 외에는 사용도장)			
	제출서류	수량	발급처	비고
담보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기부등본(대지, 건물) ○ 도시계획확인원(지적도) 또는 국토이용확인원 ○ 토지, 건축물대장등본 ○ 인감증명서 ○ 임대차계약서(사본) ○ 등기권리증(사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 1통 1통 각1통 1통 입주인전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기소 구청(군청) 구청, 읍,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본인보관분 본인보관분 	아파트및집단주택제외
농신보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○ 등기부등본 ○ 건강보험증(사본) (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) ○ 농지원부(자경농) ○ 임대차계약서(임대차농) ○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○ 세목별과세증명서 	각1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청, 읍, 면사무소 FAX민원 (1577-1000) 구청, 읍, 면사무소 세무서 구청, 읍, 면사무소 	

※ 용자신청 전 신청예정인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【참고사항】

- 위 제출서류 중 일부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
-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 시·군 지부에 문의

<서식 1-1-1> 사업대상자(마을)

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 (콘텐츠 개발 지원)

신청액	백만원
-----	-----

마을명	(위원장 성명) 000		지정연도		
마을주소 및 연락처	(☎) 010-0000 / 031-000				
운영 형태	개인사업자(마을협의회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, 개인·법인사업자, 기타()				
기타 인증 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촌융복합산업 (지정연도 :)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인성학교 (지정연도 :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인증 (인증명 :)	'25년 보험가입	<input type="checkbox"/> 체험안전보험 가입/미가입 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보험 가입/미가입		
체험휴양마을 시설 현황	체험시설 0동, 식당 0동, 숙박시설 0동, 체험농장 0동 등				
체험마을 소개	대표적인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마을의 특징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				
최근 2년 운영실적 (RUCOS 시스템 기준)	체험객 2024년 명 2025년 명	매출액	2024년 원 2025년 원		
개발프로그램 명	예) 제1회 쌀축제				
개발프로그램 요약설명	<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> 신규로 만드는지,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, 마을 자원 활용 방안 등 포함				
대표 콘텐츠 현황 (특징적인 프로그램 3가지)					
프로그램명 (축제명)	참가비용(천원) (정상가, 1인 가격)	운영시기	방문객 연령층	참가 최소인원	축제 및 체험 내용
00수확체험	10	5~8월	학생	1인 이상	00수확체험 및 수확물 제공
00만들기	20	연중상시	전연령층	20인 이상	00 만들기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콘텐츠 개발 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(조합)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- 사업시행 지침 위반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환수·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시장·군수 귀하

신청자

(서명)

- 첨부서류 : 1. 사업계획서<서식1-2> 1부.
 2. 마을지정증서,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견적서 등 각 1부.
 3. 마을 회의록<서식1-3> 1부.

<서식 1-1-2> 사업대상자(마을)

농촌체험휴양마을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서

I. 마을 개요

마을 현황

마을명		지정연도	
마을주소			
대표자		법인(사업자) 등록번호	
대표전화			

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

프로그램명	체험내용	이용시설	참가인원	주연령층
00수확체험	00수확체험 및 수확물 제공	00체험장 마을화관등	20인 이상	전연령층, 학생등

II. 세부사업 시행계획

사업 개발 필요성

○

사업 내용

○

홍보 계획

○

성과 목표

○ 방문객: 명

○ 매출액: 원

매출액 창출 계획

○

세부 프로그램 내용

프로그램명	내 용	유/무료	비고
	일시 :	무료 ※유료일 경우 티켓가격 기재	관람객 1,000명
	장소 :		
	내용 :		
프로그램명	내 용	유/무료	비고
	일시 :	무료 ※유료일 경우 티켓가격 기재	관람객 1,000명
	장소 :		
	내용 :		

세부추진계획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 고
3월	○ 마을회의 등 사전계획수립 - 시기, 장소, 인원 등	
4월	○ ○○○설계의뢰	
6월~7월	○ 공사착수 또는 물품구입 등	

소요자금

사업내용	항목	산출내역	소요사업비		
			계	융자금	자부담
00축제	홍보물제작비				
	프로그램개발 재료비				
	시범운영비				
00프로그램 개발					
합계					

Ⅲ. 기대효과

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,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

Ⅳ. 향후계획

향후 상설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, 타 축제나 콘텐츠와 연계 계획 등

<서식 1-2-1> 사업대상자(마을)

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 (시설 개보수 지원)

신청액	백만원
------------	------------

마을명	(위원장 성명) 000			지정연도		
마을주소 및 연락처	☎ 010-0000 / 031-000					
운영 형태	개인사업자(마을협의회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협동조합, 개인·법인사업자, 기타 ()					
기타 인증 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촌융복합산업 (지정연도 :)		'25년 보험가입	<input type="checkbox"/> 체험안전보험 가입/미가입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인성학교 (지정연도 :)			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보험 가입/미가입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인증 (인증명 :)					
체험휴양마을 시설 현황	체험시설 0동, 식당 0동, 숙박시설 0동, 체험농장 0동 등					
체험마을 소개	대표적인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마을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					
최근 2년 운영실적 (RUCOS 시스템 기준)	체험객	2024년	명	매출액	2024년	원
		2025년	명		2025년	원
사업신청내용	사업예정지 (상세주소)					
	소요사업비 (백만원)	계	용자금	자부담	최초 시설지원 사업명	녹색농촌, 전통테마, 권역사업, 지자체, 마을자체 등
	시설현황	시설명	설치년도	면적(m ²)	개보수 내용	

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“시설 개보수 지원”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(조합)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-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- 사업시행 지침 위반 시 관계법령 등에 따른 환수·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자

(서명)

시장·군수 귀하

- 첨부서류 : 1. 사업계획서<서식1-2-2> 1부.
 2. 마을지정증서,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견적서 등 각 1부.
 3. 마을 회의록<서식1-3> 1부.

<서식 1-2-2> 사업대상자(마을)

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

I. 마을 개요

마을 현황

마을명		지정연도	
마을주소			
대표자		법인(사업자) 등록번호	
대표전화			

마을 시설현황

시설명* (면적)	건축연도	소유자	용도	최초 시설지원 사업명
				녹색농촌, 전통테마, 권역사업, 지자체, 마을자체 등

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

프로그램명	체험 내용	이용 시설	참가 인원	주 연령층
00수확체험	00수확체험 및 수확물 제공	00체험장 마을화관등	20인 이상	전연령층, 학생등

□ 소요자금

사업내용	항목	사업량(산출내역)	소요사업비		
			계	융자금	자부담
○○공사	자재비	m ²			
	인건비				
합계					

Ⅲ. 기대효과

-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,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

<서식 1-3> 사업대상자(마을), 공통

마을회의록(자율서식)

※ 서식 자율

※ 회의 서명부 “포함”

번호	주소	성명	서명/날인	번호	주소	성명	서명/날인
1				16			
2				17			
3				18			
4				19			
5				20			
6				21			
7				22			
8				23			
9				24			
10				25			
11				26			
12				27			
13				28			
14				29			
15				30			

▶ 회의사진	
외부	내부

<서식 3> (마을 → 시군), 공통

사업계획변경 신청(신고)서

1. 주 소 :

2. 성명(법인명) :

3. 생년월일(법인번호) :

4. 사업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내용		사업비(지원액)		변경 사유	비 고
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	

* 농업농촌진흥기금 용자신청서 첨부(별지 제1호 서식)

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)

2026년 월 일

신청자 (인)

() 시장·군수 귀하

<서식 4-1> (시군 → 道, 농협), 콘텐츠 개발 지원

(발급번호 : 호)

콘텐츠 개발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 (대상자 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성별	
용자결정금액	금	원 (₩)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6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.....절.....취.....선.....
(금융기관 제출용)

콘텐츠 개발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

대상자 주소					
대상자 성명 (대상자 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성별	
용자결정금액	금	원(₩)
용 도					
비 고					

2026년 월 일

() 시장·군수 (인)

() 농협장 귀하

※ 이 확인서와 용자 신청서류를 용자취급기관(해당농협)에 제출하십시오.

사업실적(추진계획) 확인 통보서

1. 사업명 :

2. 사업자

○성명(법인명) :

○생년월일(법인번호) :

○주 소 :

3. 사업계획 (행정기관 승인분)

○사업량 :

○사업내용 :

○사업장소재지 :

○사업비 :

(단위 : 원)

총 투자계획 (가 = 나 + 다)	용 자 (나)	자 부 담 (다)	비 고

4. 사업실적

(단위 : 원)

총투자계획 (가)	사업추진실적			
	대금지급분 (라)	대금미지급분 (마)	계 (바 = 라 + 마)	비율 (바 / 가)

주 : 대금미지급분은 외상구입(설치)등으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

위와 같이 확인 통보 합니다.

2026. . .

확인자 ○○ 시장·군수

직인

NH농협은행 ○○ 시·군지부장 귀하

경기도지사 귀하

<서식 6> 시군, 공통

용자 지원실적 보고(12월말 기준)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배 정 실 적		집 행 실 적			집행잔액	미집행사유
	사업내용	배정액	사업내용	집행액	비율		
계							
마을명							

<서식 7> (용자취급기관 → 시·군), 공통

용자실행 실적

(시·군)

(단위 : 천원)

지 원 대 상 자		배정액	실행액	실행일자	비 고
주 소	성 명 (법인명)				
계					

용자지원 관리카드

인적사항

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번호)	
주소		전화번호	
사업장 소재지			

용자금 지원(대출) 현황

지원 구분	용자지원 정보			사업량	대출 실행일	상환 만기일
	확정액	지급액	상환방법			
시설개보수지원						

사업계획 및 실적

계획, 실적, 착공,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
*사업추진과정(전·중·후) 사진 포함

사업추진 점검내역

점검일자	점검자	점검 결과
00.00.00. ()	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환 중, 상환완료, 연체중 등 기재 ○ 공사(식재)중, 현상유지, 사업부진,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width: 20%;"> 사진 부착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width: 60%;">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</div> </div>

기타 특이사항

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

